외국대학과교육과정운영에따른학위수여규정 5-1-12

규정번호 5-1-12
제정일자 2005.5.16
최근개정 2019.6.17
개정차수 1차 개정
관리부서 학사지원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4조의3과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, 교수·학생 교류 등을 통한 복수(공동)학위 수여 및 외국대학의 우리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9.06.17.)

제2조(용어정의) ① “외국대학”이라 함은 우리대학과 복수(공동)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2년제 이상의 정규대학(이하 “외국대학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② “복수학위”라 함은 우리대학 및 외국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을 서로 인정하여 양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각 대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여 한 학생이 2개의 학위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
③ “공동학위”라 함은 우리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수립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양 대학이 하나의 학위증서에 두 대학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하여 한 학생이 1개의 학위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
④ “외국대학의 우리대학 교육과정 운영”이라 함은 외국대학으로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우리대학 명의의 학위수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.(신설 2019.06.17.)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우리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수·학생 교류 등을 통하여 복수(공동)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교육운영) ① 우리대학과 외국대학은 서로의 교육과정을 비교·평가하여 복수(공동)학위 수여 목적에 부합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학과(또는 전공)별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.

② 우리대학과 외국대학은 서로 제공받은 교육과정 자료를 바탕으로 복수(공동)학위 과정의 세부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운영계획, 교수법 등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·운영한다.

③ 복수(공동)학위 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적인 관리를 위한 교수교류의 방안으로 교환교수, 안식연구년제 등을 운영한다.

제5조(학위수여) ① 복수(공동)학위는 우리대학의 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고 외국대학과 그 운영에 대하여 협정 체결된 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.

② 협정사항에는 외국대학과의 복수(공동)학위를 수여하는 전공분야 및 인원 등을 명시한다.

제6조(학위수여자격) 우리대학과 외국대학이 복수(공동)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학과 또는 전공분야 입학자로 복수(공동)학위 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.

제7조(등록및학점인정) ① 복수(공동)학위 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복수(공동)학위 과정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수강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.

③ 학생교류에 따른 등록 및 학점인정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협약 체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수학기간) 수학기간은 해당학과 또는 전공별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시행하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관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명칭 변경) 이 규정 명칭을 '외국대학과교육과정공동운영에따른학위수여규정'에서 '외국대학과교육과정운영에따른학위수여규정'으로 변경한다.